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1. 6. 22. 제정

I. 목 적

- 본 지침은 여행자 휴대품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중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한 협정상대국 원산지 물품

III. 업무처리 지침

1. 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절차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세관 신고사항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란의 “있음”에 체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붙임 작성요령 참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각 호에 따른 별지 제42호 및 별지 제43호 서식

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원산지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입한 원산지 물품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

협정	적용대상	협정	적용대상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인도	미화 1천달러 이하	중국	미화 700달러 이하
		베트남	미화 600달러 이하
		아세안	미화 200달러 이하

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라. EU, 영국, EFTA 및 터키와의 협정에 대해서는 「2-1. EU, 영국, EFTA 및 터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규정한 각 목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로 간주

마.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장이 진위성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 할 수 있음

* 원본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캡처한 이미지 파일 또는 모바일 휴대품 신고 앱(웹)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바. 세관장은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아래 내용)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시) >

1. 협정 상대국이 아닌 국가에서 작성·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서류에 기재된 내용(판매자·작성자·판매일자·상품명·가격·서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기재된 날짜와 여행자의 일정 등으로 볼 때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직접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서류와 현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6. 타인의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8. 전자적인 편집·가공 등으로 서류의 진위성·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9. 그 밖에 서류의 진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여행자가 부정 특혜를 신청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EU, 영국, EFTA 및 터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가. 해당 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아래 내용)과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등이 기재된 것

※ 단, EU 및 영국과의 협정은 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협정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인정

< EU · 영국 · EFTA ·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³⁾

(작성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을 명확히 기재)⁴⁾

<작성요령 >

-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는 경우 괄호안의 단어를 생략하거나 빈 칸으로 둠.
다만, 터키와의 협정의 경우에는 괄호 및 괄호 안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함
- 2)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
 - 협정문에 있는 당사국명, 당사국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당사국의 명칭 등
- 3) 해당 정보가 그 서류 자체에 포함된 경우 기재 생략 가능
- 4)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 및 '서명하는 인의 이름' 기재 생략 가능

나. 협정상대국에서 발급된 구매영수증의 전면 또는 후면에 원산지 신고문안과 수기서명을 기재한 것

다. 구매영수증의 크기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을 기재한 것. 단, 「2-1. 별도용지에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인정가능한 원산지증명서 예시 >

상업서류 증명 사례		구매영수증 증명 사례																									
Invoice Invoice No. 13/000000227 Your Customer- No. 10114 Your VAT Registration Your Fax No. Your Reference Date 09.07.2013 Page 1 of 2 Order No. 13/000000211 Date 04.07.2013 Contact person Phone No. Shipment method CIF Busan Port, Korea Astracon <table border="1"> <thead> <tr> <th>Pos.</th> <th>Description</th> <th>Quantity</th> <th>Unit</th> <th>Unit Price</th> <th>Unit of M</th> </tr> </thead> <tbody> <tr> <td>1</td> <td>Lot No. 13-001 200107 E 12 - 25 kg</td> <td>750 750 kg</td> <td></td> <td></td> <td>Eur</td> </tr> <tr> <td colspan="6">Value FOB € Value freight € Value insurance €</td> </tr> <tr> <td colspan="6">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IONADAN K <i>[Signature]</i> </td> </tr> </tbody> </table>		Pos.	Description	Quantity	Unit	Unit Price	Unit of M	1	Lot No. 13-001 200107 E 12 - 25 kg	750 750 kg			Eur	Value FOB € Value freight € Value insurance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IONADAN K <i>[Signature]</i>						*** CUSTOMER RECEIPT *** Holland No: 100/4293 Op: Elifina 15.05.16 18:23 TILL: TILL 2 ** IMMEDIATE NON-CASH ** ITA 12033033951549356990 1,295.00 22.00 Refund: 161.50 EUR 161.50 EUR ITA 12033034488549361337 590.00 22.00 Refund: 73.50 EUR 73.50 EUR SUBTOTAL EUR Cheques 235.00 EUR Card No. [Redacted] We acknowledge receipt of the Global Blue Form(s) which will be processed to the credit card indicated on the Form(s). Immediate Refund to a credit card account is made within five (5) days of receipt of a Form. Processing time for any involved credit card company or bank is excluded. Please note that your Form(s) will be double checked by our processing centre. THE EXPORTER OF THE GOODS MUST SIGN THIS FORM OF EUROPEAN UNION PREFERENTIAL ORIGIN We thank you for using our Tax Free service and wish you a pleasant trip.	
Pos.	Description	Quantity	Unit	Unit Price	Unit of M																						
1	Lot No. 13-001 200107 E 12 - 25 kg	750 750 kg			Eur																						
Value FOB € Value freight € Value insurance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IONADAN K <i>[Signature]</i>																											

사. 원산지신고문안 등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나 세관장이 경미한 형식적 오류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인정

< 경미한 형식적 오류의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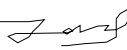
1.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시)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2. 협정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시)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3.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
(예시) 인증수출자번호·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4.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소문자로 수기 작성한 경우
5. 원산지신고문안의 각주 또는 설명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시)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2-1. 별도용지에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인정기준

가. 인정 요건

- 1) A4용지와 같은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잉크 등 영구적 방법)로 기재되어야 함
- 2) 구매영수증은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러로 별지에 부착(고정)
- 3)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간 동일해야 함
 - * 구매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 별지에는 작성일자 기재 생략 가능
- 4)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되어야 함

< 별지용지 작성 예시 >

<A4 용지 등 별지>	
구매영수증 판매점 명칭, 주소 등 자동출력 **구매내역** ◇ 판매일자 및 시간..... ◇ 상품명(모델명)..... ◇ 구입가격..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 작성일자(구매영수증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쇄, 타자, 스탬프로 찍거나 수기(대문자)로 기재>
	☆ 작성자 이름 및 서명: 간인(접인)형태 JONADAN, 

나.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

- 1)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는 아니나, 작성자 이름이 명확하고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서명이 모두 동일한 경우
- 2) 스탬프로 날인된 원산지신고문안이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있고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별지에 기재된 경우
-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다. 불인정 대상

- 1) 구매영수증에는 서명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을 모두 별지에 작성한 경우
- 2)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을 모두 별지에 작성하고, 별지에 단순히 구매영수증을 부착한 경우
- 3) 「1. 협정관세 적용 절차」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 불인정 되는 원산지증명서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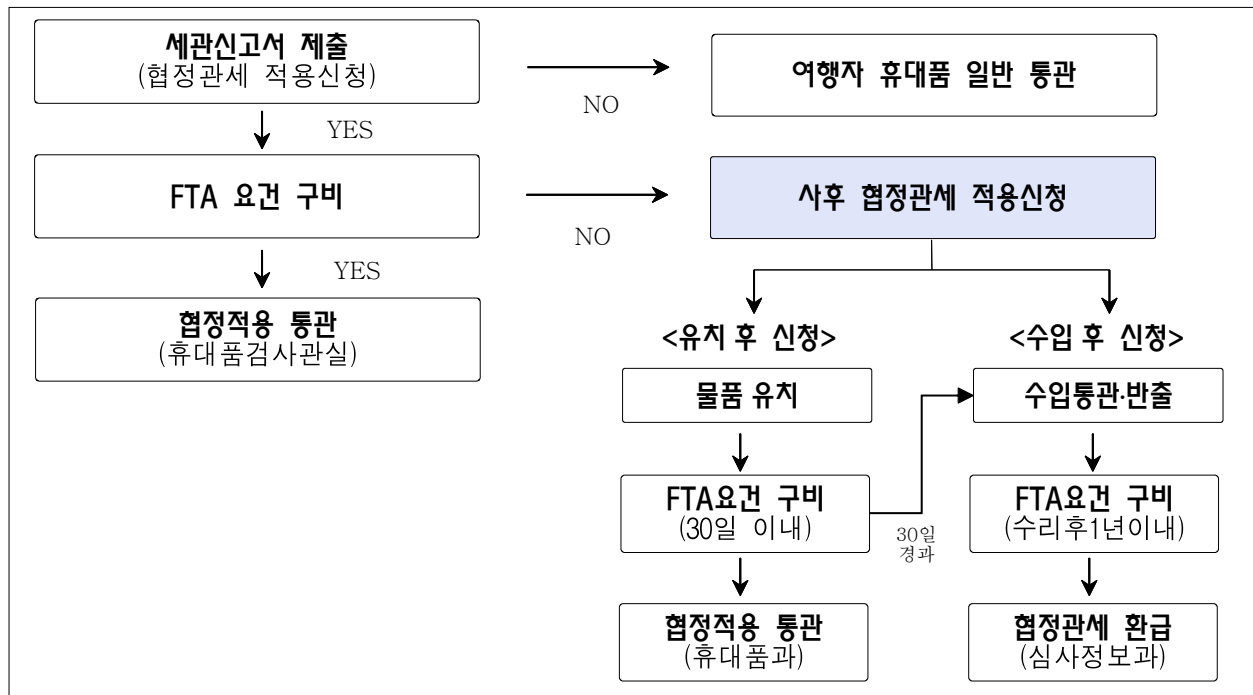
별지 작성 사례	원산지신고문안이 아닌 경우
*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만 기재된 경우	* 협정상외 원산지신고문안이 아닌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 사후적용 방법

-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 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나. 여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유치한 후 유치기간 내 구매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여행자 휴대품 사후 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절차>



IV. 시행일자

- ☐ 이 지침은 2021. 7. 1. 부터 시행함
- ☐ 「한-EU FTA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 지침」(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6. 9. 1. 제정)은 본 지침 시행에 따라 폐지함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외국인에 한함)	
직업		여행기간	일
여행목적	☐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항공편명		동반가족수	명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1. 2. 3.			
국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세관 신고 사항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1.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총 금액 : 약]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있음	없음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지갑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총금액 : 약]	있음	없음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헌법질서·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있음	없음
5.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 축산농가 방문자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없음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있음	없음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85mm×210mm[백상지 120g/㎡]

[신고물품 기재란]

☞ 술·담배·향수(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술	()병, 총 ()L, 금액 US \$()
담배	()갑(20개비 기준) 향수 ()mL

☞ 그 밖의 면세범위(US \$600) 초과 물품

품명	수(중)량	금액

1. 휴대품 면세범위

☞ 술·담배·향수

술	담배	향수
1병 (1L 이하로서 US \$400 이하)	200개비	60mL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술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물품

US \$600 이하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 총포(모의총포)·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 메트암페타민·아편·헤로인·대마 등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 헌법질서·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옹답, 사향, 녹용, 약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3. 검역 대상 물품

-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 ☞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오렌지·체리 등 생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

※ 유의사항

-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 가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